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. 11. 9 선고 2021가단75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인도청구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변 론 종 결 2021. 11. 9.

판 결 선 고 2021. 11. 9.

주 문

1. 피고들은 F(주민등록번호 1 생략)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. 7. 9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 판결),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허윤범

별지